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43 발의연월일: 2022. 9. 30.

발 의 자: 강기윤 • 전봉민 • 김용판

서범수 · 김선교 · 박성중

김도읍 • 윤상현 • 박형수

김석기 • 윤주경 • 서정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 인 및 시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에 소관 업무 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가정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기가정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보공유 협조 요청기관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보가 보장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 요청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 위원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①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	①
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	
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	
체·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	
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	
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	
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	
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	
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7의4. (생 략)	1. ~ 7의4.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u>신용회복위원회</u>
<u>8.</u> (생 략)	<u>9.</u>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